

II. 보험제도 변화

- 2006년 보험제도의 변화는 새로운 성장 기회와 더불어 타업종과의 경쟁 심화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금융시장 통합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이 중시되고 있음.
 - 첫째,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신탁업 겸영 허용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될 것임.
 - 다만, 퇴직연금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 개방된 만큼 상호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 둘째, 판매채널 측면에서도 타업종과의 경쟁 심화 및 채널의 통합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즉, 방카슈랑스의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설계사의 수익증권 권유행위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됨.
 - 셋째, 보험산업이 당면하게 될 성장과 경쟁의 환경으로부터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임.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 체제를 도입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변액보험의 공시를 강화할 예정임.

1. 새로운 성장의 기회 : 업무영역 확대

가. 퇴직연금제도 시행

1) 개요

- 기존 퇴직금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됨.
 -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5인이하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체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음.
 -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가입대상을 2008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잦은 직장 이동과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따른 노후 자금 활용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퇴직계좌(IRA)를 도입할 예정임.

2)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퇴직금일시금 금액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

의 운용방법(원리금보장 상품 1개 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함.

○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연금사업자로서 등록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적립금의 60%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함.

-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신의성실원칙 및 충실의무 등과 같은 수탁자 책임의무 규정을 두어 수탁자 책임 위반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함.

<표 II-1> 제도설계 및 운영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내용

구분	세부내용	규정	
제도설계관련 규정	급여제도 설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법제 4조3항
	퇴직금우선변제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질권, 저당권보다 우선변제	법제11조2항
	DB형 설정요건	일시금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	법제12조4항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지급	법제12조6항 가호
	DC형 설정요건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 납부	법제13조2항
		매반기1회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가지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법제13조4항
	운용상품제공	DC형과 IRA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시행령 제9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시행령제10조
업무의 위탁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분리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형태로 위탁 -재무건전성,인적·물적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 위탁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계리(DB형에 한함)	법제13조 제5호	
중도인출허용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자료: 류건식, "한국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발전과제", 『보험동향』, 2005년 가을호, 2005. 9.

3) 퇴직연금제도의 평가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실질적 수급권의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시킴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 최저적립기준이 60%로 설정됨에 따라 기업파산시 비적립된 40%에 대한 수급권보장이 미흡함.
 -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지급이 허용되어 있어 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퇴직연금제도로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가 취약하여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퇴직연금관련 세금공제 혜택이 개인연금가입자에게 제공하였던 240만원에 퇴직연금가입분까지 합쳐 30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제 측면에서의 유인효과가 매우 취약함.
 - 퇴직보험 폐지가 5년 유예되었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기존 퇴직금제도의 적용이 가능하여 퇴직연금의 도입을 서두르지 않는 기업이 많을 가능성이 높음.

나. 보험회사 신탁업 겸영 허용

1) 신탁업법 개정

- 2005년 6월 29일 신탁업법 일부 조항 개정으로 그동안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던 보험회사의 신탁업 겸영이 허용되었음.
- 또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탁업법시행령 개정(2005년 11월 25일 공포) 내용 및 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겸영에 따른 감독체계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탁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
 - 증권·보험회사에 대한 신탁업 겸영인가시 적정수준의 수익성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 신탁회사의 충실의무²⁾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유·신탁부문간 거래와 계열회사에 대한 신탁자금 운용을 제한함.

2) 개정 신탁업감독규정 주요 내용

- 신탁업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가시 사업계획 심사항목으로 적정 수준의 수익성 및 건전한 재무상태 유지요건을 추가함.
 -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200% 이상,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비율(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미만,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을 안정적으로 상회하여야 함.

2) 수탁자가 오로지 신탁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수익자에 대한 의무와 자기이익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

- 일정한 자기자본 및 채무비율을 충족하는 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사의 주요 출자자 요건중 부채비율 요건 및 자기자본 요건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일정한 자기자본채무비율 : 증권사 자기자본 2,500억원·영업용순자본비율 200% 이상, 보험사 자기자본 1,000억원·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 고유부문과 신탁부문간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신탁자금 운용시 고유부문의 유가증권 중개를 금지하되, 3억원 이상 거액 특정금전신탁 또는 장내거래주식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 신탁회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자금 운용한도를 계좌별 수탁금액의 10% 이내로 설정함.
- 신탁경영 증권·보험회사가 신탁의무 위반에 대비한 손해배상 재원 마련을 위해 적립하는 연간 공탁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100분의 1에서 자본금의 2,500분의 1로 경감함.
-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8년 11월 이전에 설정된 연금형 불특정금전신탁의 보수율을 자율화 함.
- 퇴직연금신탁에서 고객이 자행예금 운용을 지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신탁자금을 자행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2. 판매채널 통합화 및 경쟁 심화

가. 교차모집제도 도입

1) 도입 개요

- 2006년 8월 보험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가 타업종의 1개 보험 회사에 한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모집 제도가 도입 · 시행될 예정임.
- 소비자의 편의성제고와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라 발생한 보험설계사의 피해를 보전해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타업종 보험회사의 선택권을 보험회사와 설계사 중 누가 갖는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음.

2) 교차모집제도의 평가

- 교차모집 제도의 도입은 수익성 및 영업력의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는 반면, 불완전 판매, 과당 경쟁, 개인정보 악용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우려되고 있음.
- 교차모집 제도의 시행은 보험 설계사에게는 일정부분 수익성 제고와 영업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에 대해서는 윈스톱 쇼핑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반면,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타업종 상품 판매로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 · 손보간 유사성이 높은 제3보험 분야에서는

과당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타업종 보험회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승환계약유도 등 불공정 판매행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 방카슈랑스 확대

1) 방카슈랑스 확대 일정

- 2003년 8월 1단계 저축성 상품을 시작으로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2005년 4월 제 3보험종 소멸성보험에 이어 2006년 10월에는 제3보험 중 환급형 보험으로 허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방카슈랑스 허용 일정은 1단계 시행이후 불공정 판매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2005년 허용 일정을 재조정하였음.
- 2008년 4월에는 자동차 및 일반 보장성보험이 포함될 예정이며 단체 보험, 해상보험 등은 추후 검토 대상임.

<그림 II-1> 방카슈랑스 관련 제도 시행 계획



2) 방카슈랑스 확대 평가

- 2006년 10월 제3보험 중 환급형 보험이 허용될 경우 은행의 보험 판매 영업력이 상당 폭 호전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소비자의 방카슈랑스에 대한 선호도가 순수 보장형보다는 환급형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만큼 2005년 4월에 소멸성 제3보험이 허용된 경우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제3보험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전략적 종목인 만큼 시장 잠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4월에 일반보장성과 자동차보험이 허용될 경우 사실상 완전개방되는 만큼 전통 판매채널의 효율성 향상과 판매채널 다양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설계사 수익증권 판매 권유행위 허용 추진

- 재정경제부는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 19개 법령, 10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내년부터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월 22일 밝힘.
 -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초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 등은 판매회사와 펀드 취득권유 위탁계약을 체결, 고객들에게 펀드가입을 권유할 수 있음.
 - 다만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간접투자관련 교육을 30시간 받은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투자상담사도 증권업협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 이에 따라 고객들은 금융회사 점포나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됨³⁾.
-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05년 11월 30일 입법예고함.

3. 소비자보호 및 감독체계 선진화

가. 재무건전성 감독 체제의 선진화

1) RAAS 도입

-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체제를 현행 사후적, 교정적 감독기능에서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감독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06년도는 리스크감독체제의 핵심과제로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의 노출정도, 통제기능 및 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회사의 리스크수준에 맞는 감독수단을 제시하는 리스크평가제도의 도입 추진이 예상됨.

※ 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제1단계(2004) : RAAS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기준 마련

제2단계(2005) : RAAS 운영 실무지침 마련 및 시범운영

제3단계(2006) : RAAS 시행 및 전산화 추진 완료

3) 현재는 간접투자증권은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본 지점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

2) 위험기준 자기자본요구제도

- 금융감독원은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보다 선진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RAAS 도입을 기반으로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2007년 시행을 목표로 RBC제도 도입방안을 2006년까지 마련할 예정임.

※ RBC(Risk-based Capital), 2007년 시행

제1단계(2004년말) : 장기적인 제도 도입방향 설정

제2단계(2005년) :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제3단계(2006년) : 新 지급여력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나. 변액보험 관련 제도 정비

1) 변액보험의 성장과 문제점

- 최근 변액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개인생명보험의 2005년 4~8월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11.2%에 이르고 있으나 변액보험을 제외한 성장률은 2.1%에 불과하여 변액보험이 성장의 대부분을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조기 해약시 환급금 관련 민원 발생, 주식에 대한 지나친 투자 확대, 판매시 과도한 수익률 제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2)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향

- 공시 강화와 더불어 보험으로서의 기본 기능 충실화를 유도하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 특별계정상의 투입원금을 공개하여 환급금과 관련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축소하고 과도한 주식 편입 확대를 방지하여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함.
 - 그러나 투입원금의 공개는 초기 해약시 발생하는 과소 환급금의 원인인 사업비의 공개로 이어져 상품의 매력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음.
 - 사업비를 축소할 경우 변액보험의 마케팅 여력이 약화되어 변액보험의 성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음.
 - 변액보험이 FY2005 생명보험산업 성장의 핵심축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변액보험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향과 그 영향은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